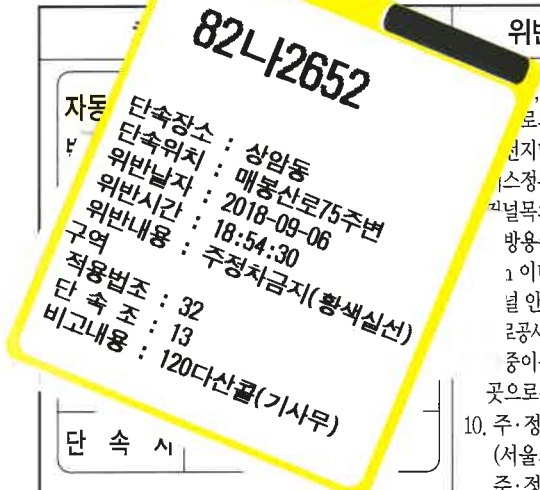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No. 312025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참조)내에 본 스티커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8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 90,000원
- ※ **의견진술서 제출 및 과태료 납부 안내**
 - 의견진술문의 (☎ 02) 3153-9656~9, FAX : 02) 3153-9699)
 - 과태료 자진 납부문의 : 단속일로부터 평일기준 3일 경과후 전화요 (☎ 02) 3153-9650)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적지로 우편발송됩니다.

○ 위반내역

 <p>82N12652</p> <p>단속장소 : 상암동 단속위치 : 매봉산로75주변 위반일자 : 2018-09-06 위반시간 : 18:54:30 구역 : 주정차금지(황색실선) 적용법조 : 32 단속조 : 13 비고내용 : 120다산골(기사부)</p>	<p>위반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p> <p>1. 횡단보도, 건물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 금지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금지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기둥, 관, 선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방울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열 안 및 다리 위 주차 금지구역의 공사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주차 금지구역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p> <p>10. 주·정차(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 황색실선, 황색점선 등)</p> <p>11. 다른 교통에 장애(2중, 주차구획선의 주차, 진입로차단, 일방통로 주차 등)</p> <p>12. 주차의 방법과 시간 등의 제한사항 위반의 주차</p>
<p>단속시</p> <p>예고, 경고 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등 안내 (뒷면 참조)</p>	

차량소유자 등 귀하

